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71회 임시회 (2024. 10. 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권 하 나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115
- 나. 제 안 자: 고병준 의원 외 6인
- 다. 제안일자: 2024년 9월 16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9월 30일(월)

### 2. 제안사유

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조례」 개정  
맞춰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청년의 연령을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 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정의함(안 제2조  
제1호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
  - 2)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2조

3)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24. 9. 12. ~ 9. 2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12일 고병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청년의 범위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의 개정예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의 정의를 기존 “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” 에서 “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 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”라고 수정함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청년 “이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와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</u>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 “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<u>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</u>----- ----- <u>말한다. 다만,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</u> <u>에 따른다.</u></p>

### < 청년 연령 현황 >

구 분	상한연령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시행령 제2조	15세 이상 29세 이하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제3조제1호	19세 이상 39세 이하
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, 청년의 범위를 29세에서 39세로 확대함으로써 마포구 청년 정책의 수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*■ 「청년기본법」**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**■ 「문화예술진흥법」**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**■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체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**■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시행령**

제2조(청년의 나이)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”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